|  |  |  |
| --- | --- | --- |
| **식용균 균종 관리방법**  농업부령 2015년 제1호  (2006년 3월 27일 농업부 령 제62호로 공표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농업부령 2013년 제5호, 2014년 4월 25일 농업부령 2014년 제3호, 2015년 4월 29일 농업부령 2015년 제1호에 의해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식용균 균종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식용균 품종의 선발육종과 식용균 균종(이하 '균종'으로 약칭)의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용균 품종의 선발육종과 균종의 생산, 경영, 사용, 관리 등 활동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균종이라 함은 식용균 균사체 및 그 생장기질로 구성된 번식재료를 지칭한다.  균종은 모종(1급종), 원종(2급종) 및 재배종(3급종)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제4조** 농업부가 전국 균종 업무를 총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식용균, 하동)행정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균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식용균 균종 자원 보호와 우량품종의 선발육종, 생산, 갱신, 보급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선발육종, 생산, 경영의 통합을 격려한다.  **제2장 유전질 자원 보호 및 품종의 선발육종**  **제6조** 국가는 식용균 유전질 자원을 보호하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 식용균 유전질 자원의 채집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채집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채집수속을 신청 및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 해외에 식용균 유전질 자원(균사체가 자란 재배기질 및 균종분리용 자실체 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해외에서 균종을 도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도입 후 30일 내에 적당한 량을 중국농업미생물균종보관관리센터로 송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업체와 개인이 식용균 품종의 선발육종과 개발에 종사하는 것을 격려하고 과학연구 단체와 기업의 신품종 선발육종 협력을 격려하며 기업의 신품종 선발육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선발육종한 신품종은 법에 따라 직물 신품종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품종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1조** 식용균 품종을 선발육종(도입)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에 품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는 식용균 품종 인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종 인정 기술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식용균 품종 명칭은 규범적으로 명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명명 규칙은 농업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균종 생산과 경영**  **제13조** 균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재배종의 경영에만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경영자는 균종 관련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필요한 균종 저장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해야 한다.  **제14조** 모종과 원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하며 농업부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한다.  재배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한다.  **제15조** 모종과 원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모종을 생산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이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원종을 생산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을 통과한 검사인력 1명 이상, 생산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3. 필요한 멸균, 접종, 배양, 저장 등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필요한 품질검사기기와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모종을 생산하는 버섯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4. 생산현장의 환경위생 및 기타 조건이 농업부의 <식용균 균종 생산기술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재배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이 1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을 통과한 검사인력 1명 이상, 생산기술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3. 필요한 멸균, 접종, 배양, 저장 등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필요한 품질검사기기와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4. 생산현장의 환경위생 및 기타 조건이 농업부의 <식용균 균종 생산기술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신청표; 2. 영업집조 복사본; 3. 균종 검사인력, 생산기술인력의 자격증명; 4. 기기설비·시설 리스트 및 소유권 증명, 주요 기기설비의 사진; 5. 균종 생산경영 현장의 사진 및 소유권 증명; 6. 품종 특성 소개서; 7. 균종 생산경영 품질 보증 제도.   모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품종이 수권품종인 경우 품종권자(품종 선발육종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서면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모종과 원종의 생산경영 허가증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의견에 서명해야 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심사의견을 보고받은 날로 부터 20일 내에 심사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산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재배종 생산경영 허가증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산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생산경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기존 생산경영 허가증을 소지하여 기존 신청절차에 따라 허가증 발급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 기재항목이 변경된 경우 피허가인은 기존 심사비준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균종은 등급순으로 생산해야 한다. 하급 균종은 그 직상급 균종을 이용한 생산만이 가능하고 재배종은 균종의 번식확대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상급 균종의 생산경영 허가증을 획득한 업체와 개인은 하급 균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21조**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균종을 생산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균종을 생산하는 업체와 개인은 농업부의 <식용균 균종 생산기술 규정>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균종 생산기록을 작성하여 생산 장소, 시간, 수량, 배양기 배합방법, 배양조건, 균종 출처, 조작인, 기술담당자, 검사기록, 균종의 이동경로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생산기록은 균종 판매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균종을 경영하는 업체와 개인은 균종 경영기록을 작성하여 균종의 출처, 저장시간과 조건, 구입처, 운송, 취급인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경영기록은 균종 판매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4조** 판매하는 균종에는 라벨과 균종 품질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균종의 종류, 품종, 등급, 접종일자, 보관·저장 조건, 유통기한,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번호, 집행표준 및 생산자의 명칭, 생산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된 내용은 판매하는 균종과 일치해야 한다.  균종 경영자는 균종의 품종 특성 설명, 재배 요점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균종의 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재4장 균종 품질**  **제25조** 농업부가 전국 균종 품질 감독추출검사규획 및 본 급 감독추출검사계획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균종 품질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며 전국규획 및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급 감독추출검사계획을 제정한다.  균종 품질 감독추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출검사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반복적으로 추출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균종 품질 검사기구에 의뢰하여 균종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균종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필요한 검사·측정 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의 검정을 통과해야 한다.  **제27조** 균종 품질 검사기구는 균종 검사원을 보유해야 한다. 균종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의 교육배경을 가졌거나 증급 이상 전문기술직함 보유; 2. 균종 검사 기술직에 3년 이상 종사; 3.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통과.   **제20조** 가짜 또는 품질불량 균종의 생산, 경영을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짜 균종에 속한다.   1. 균종이 아닌 것을 균종으로 사칭한 경우; 2. 균종의 종류, 품종, 등급이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불량 균종에 해당된다.   1. 품질이 국가에 규정한 종자 품종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품질이 라벨에 표시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균종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경우.   **제5장 수출입 관리**  **제29조** 균종 수출입에 종사하는 업체는 생산경영 허가증을 구비함과 더불어 국가의 대외무역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균종 수출입무역 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30조** 균종 수출입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균종 수(출)입 심사비준표>를 작성하여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균종 수출입 심사비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제31조** 균종 수출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에서 수출입을 허용하는 균종 유전질 자원이어야 한다. 2. 균종의 품질이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3. 균종의 명칭, 품종 특성, 수량, 원산지 등 관련 증명이 진실하고 완비되어야 한다. 4.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30조** 균종 수출입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복사본, 영업집조 부본 및 수출입무역 자격증명; 2. 식용균 품종 설명서; 3. 제31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함됨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류.   **제30조** 해외 고객을 위하여 종자를 제조하는 목적으로 균종을 수입하는 경우 이 방법 제29조의 규제를 받지는 아니하나 대외종자제조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수입한 균종은 종자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해외에서 도입한 시험용 균종과 번식확대를 통해 획득한 균종은 상품 균종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이 방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이 방법에서 균종 품종 특성이라 함은 식용균 품종 특성의 약칭이며 온도, 습도, 산도·알칼리도, 빛, 산소 등 환경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과 스트레스 저항성, 생산 능력, 버섯형성 속도, 버섯형성 횟수, 재배주기, 상품 품질 및 재배습성 등 농예 성질과 형상을 포함한다.  **제36조** 야생 식용균 균종의 채집과 수출입 관리는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련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7월 1일 농업부가 공표한 <전국 식용균 균종 잠행관리방법>(농농발[1996]6호)는 동시에 폐지하며 <전국 식용균 균종 잠행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에 실효된다. |  | **食用菌菌种管理办法**  农业部令2015年第1号  （2006年3月27日农业部令第62号公布；2013年12月31日农业部令2013年第5号、2014年4月25日农业部令2014年第3号、2015年4月29日农业部令2015年第1号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保护和合理利用食用菌种质资源，规范食用菌品种选育及食用菌菌种（以下简称菌种）的生产、经营、使用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食用菌品种选育和菌种生产、经营、使用、管理等活动，应当遵守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菌种是指食用菌菌丝体及其生长基质组成的繁殖材料。  　　菌种分为母种（一级种）、原种（二级种）和栽培种（三级种）三级。  **第四条**　农业部主管全国菌种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食用菌，下同）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菌种管理工作。  **第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食用菌种质资源保护和良种选育、生产、更新、推广工作，鼓励选育、生产、经营相结合。  **第二章　种质资源保护和品种选育**  **第六条**　国家保护食用菌种质资源，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和破坏。  **第七条**　禁止采集国家重点保护的天然食用菌种质资源。确因科研等特殊情况需要采集的，应当依法申请办理采集手续。  **第八条**任何单位和个人向境外提供食用菌种质资源（包括长有菌丝体的栽培基质及用于菌种分离的子实体），应当报农业部批准。  **第九条**　从境外引进菌种，应当依法检疫，并在引进后30日内，送适量菌种至中国农业微生物菌种保藏管理中心保存。  **第十条**国家鼓励和支持单位和个人从事食用菌品种选育和开发，鼓励科研单位与企业相结合选育新品种，引导企业投资选育新品种。  　　选育的新品种可以依法申请植物新品种权，国家保护品种权人的合法权益。  **第十一条**　食用菌品种选育（引进）者可自愿向全国农业技术推广服务中心申请品种认定。全国农业技术推广服务中心成立食用菌品种认定委员会，承担品种认定的技术鉴定工作。  **第十二条**　食用菌品种名称应当规范。具体命名规则由农业部另行规定。  **第三章　菌种生产和经营**  **第十三条**　从事菌种生产经营的单位和个人，应当取得《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  　　仅从事栽培种经营的单位和个人，可以不办理《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但经营者要具备菌种的相关知识，具有相应的菌种贮藏设备和场所，并报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备案。  **第十四条**　母种和原种《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由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报农业部备案。  　　栽培种《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由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报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备案。  **第十五条**　申请母种和原种《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的单位和个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生产经营母种注册资本100万元以上，生产经营原种注册资本50万元以上；  　　（二）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检验人员1名以上、生产技术人员2名以上；  　　（三）有相应的灭菌、接种、培养、贮存等设备和场所，有相应的质量检验仪器和设施。生产母种还应当有做出菇试验所需的设备和场所。  　　（四）生产场地环境卫生及其他条件符合农业部《食用菌菌种生产技术规程》要求。  **第十六条**　申请栽培种《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的单位和个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注册资本10万元以上；  　　（二）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检验人员1名以上、生产技术人员1名以上；  　　（三）有必要的灭菌、接种、培养、贮存等设备和场所，有必要的质量检验仪器和设施；  　　（四）栽培种生产场地的环境卫生及其他条件符合农业部《食用菌菌种生产技术规程》要求。  **第十七条**　申请《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应当向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提交下列材料：  　　（一）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申请表；  　　（二）营业执照复印件；  　　（三）菌种检验人员、生产技术人员资格证明；  　　（四）仪器设备和设施清单及产权证明，主要仪器设备的照片；  　　（五）菌种生产经营场所照片及产权证明；  （六）品种特性介绍；  （七）菌种生产经营质量保证制度。  　　申请母种生产经营许可证的品种为授权品种的，还应当提供品种权人（品种选育人）授权的书面证明。  **第十八条**　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受理母种和原种的生产经营许可申请后，可以组织专家进行实地考查，但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签署审核意见，并报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批。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审核意见之日起20日内完成审批。符合条件的，发给生产经营许可证；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受理栽培种生产经营许可申请后，可以组织专家进行实地考查，但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完成审批。符合条件的，发给生产经营许可证；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九条**　菌种生产经营许可证有效期为3年。有效期满后需继续生产经营的，被许可人应当在有效期满2个月前，持原证按原申请程序重新办理许可证。  　　在菌种生产经营许可证有效期内，许可证注明项目变更的，被许可人应当向原审批机关办理变更手续，并提供相应证明材料。  **第二十条**菌种按级别生产，下一级菌种只能用上一级菌种生产，栽培种不得再用于扩繁菌种。  　　获得上级菌种生产经营许可证的单位和个人，可以从事下级菌种的生产经营。  **第二十一条**禁止无证或者未按许可证的规定生产经营菌种；禁止伪造、涂改、买卖、租借《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  **第二十二条**　菌种生产单位和个人应当按照农业部《食用菌菌种生产技术规程》生产，并建立菌种生产档案，载明生产地点、时间、数量、培养基配方、培养条件、菌种来源、操作人、技术负责人、检验记录、菌种流向等内容。生产档案应当保存至菌种售出后2年。  **第二十三条**　菌种经营单位和个人应当建立菌种经营档案，载明菌种来源、贮存时间和条件、销售去向、运输、经办人等内容。经营档案应当保存至菌种销售后2年。  **第二十四条**　销售的菌种应当附有标签和菌种质量合格证。标签应当标注菌种种类、品种、级别、接种日期、保藏条件、保质期、菌种生产经营许可证编号、执行标准及生产者名称、生产地点。标签标注的内容应当与销售菌种相符。  　　菌种经营者应当向购买者提供菌种的品种种性说明、栽培要点及相关咨询服务，并对菌种质量负责。  **第四章　菌种质量**  **第二十五条**　农业部负责制定全国菌种质量监督抽查规划和本级监督抽查计划，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对本行政区域内菌种质量的监督，根据全国规划和当地实际情况制定本级监督抽查计划。  　　菌种质量监督抽查不得向被抽查者收取费用。禁止重复抽查。  **第二十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可以委托菌种质量检验机构对菌种质量进行检验。  　　承担菌种质量检验的机构应当具备相应的检测条件和能力，并经省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考核合格。  **第二十七条**　菌种质量检验机构应当配备菌种检验员。菌种检验员应当具备以下条件：  　　（一）具有相关专业大专以上文化水平或者具有中级以上专业技术职称；  　　（二）从事菌种检验技术工作3年以上；  　　（三）经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  **第二十八条**　禁止生产、经营假、劣菌种。  　　有下列情形之一的，为假菌种：  　　（一）以非菌种冒充菌种；  　　（二）菌种种类、品种、级别与标签内容不符的。  　　有下列情形之一的，为劣菌种：  　　（一）质量低于国家规定的种用标准的；  　　（二）质量低于标签标注指标的；  （三）菌种过期、变质的。  **第五章　进出口管理**  **第二十九条**　从事菌种进出口的单位，除具备菌种生产经营许可证以外，还应当依照国家外贸法律、行政法规的规定取得从事菌种进出口贸易的资格。  **第三十条**　申请进出口菌种的单位和个人，应当填写《进（出）口菌种审批表》，经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后，依法办理进出口手续。  　　菌种进出口审批单有效期为3个月。  **第三十一条**进出口菌种应当符合下列条件：  　　（一）属于国家允许进出口的菌种质资源；  　　（二）菌种质量达到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  　　（三）菌种名称、种性、数量、原产地等相关证明真实完备；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三十二条**　申请进出口菌种的单位和个人应当提交下列材料：  　　（一）《食用菌菌种生产经营许可证》复印件、营业执照副本和进出口贸易资格证明；  　　（二）食用菌品种说明；  　　（三）符合第三十一条规定条件的其他证明材料。  **第三十三条**　为境外制种进口菌种的，可以不受本办法第二十九条限制，但应当具有对外制种合同。进口的菌种只能用于制种，其产品不得在国内销售。  　　从境外引进试验用菌种及扩繁得到的菌种不得作为商品菌种出售。  **第六章　附 则**  **第三十四条**　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第三十五条**　本办法所称菌种种性是指食用菌品种特性的简称，包括对温度、湿度、酸碱度、光线、氧气等环境条件的要求，抗逆性、丰产性、出菇迟早、出菇潮数、栽培周期、商品质量及栽培习性等农艺性状。  **第三十六条**野生食用菌菌种的采集和进出口管理，应当按照《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的规定，办理相关审批手续。  **第三十七条**　本办法自2006年6月1日起施行。1996年7月1日农业部发布的《全国食用菌菌种暂行管理办法》（农农发〔1996〕6号）同时废止，依照《全国食用菌菌种暂行管理办法》领取的菌种生产、经营许可证自有效期届满之日起失效。 |